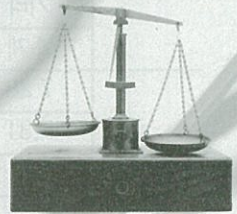


2014년 세법개정안 - 고용 · 투자 확대하는 중소기업 지원



## 2014년 세법개정안 - 고용·투자 확대하는 중소기업 지원

지난 8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대거 신설됐다. 중소기업 부담을 대폭 줄여 일자리·설비·기술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고용 시장의 88%를 차지하는 만큼 중소기업에서 줄어든 세 부담이 이들 근로자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외에도 기업 승계를 적극 지원하며 수도권 밀집형 경제구조를 지방으로 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하여「공판지포장물류지」9·10월호에서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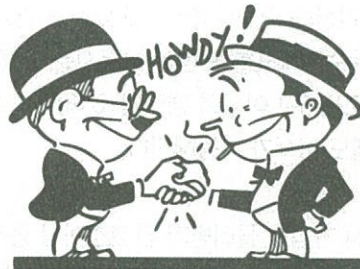
### 고용 늘린 중소기업 혜택 늘어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우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3년 더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공제율은 투자보다 고용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했다. 이 세액공제는 기업이 기존 고용인원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을 하면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4~8%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중소·중견, 서비스업, 수도권 밖 소재 기업일수록 세 혜택이 늘어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취업청년이 전역 후 같은 회사에 복직하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5년 간 절반만 내도된다. 기존에는 3년이였다. 또 경력 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 10%를 세액 공제받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근로자 임금 증가분의 세액 공제도 신설됐다. 특히 중소기업(10%)에는 대기업(5%)보다 큰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세부내용〉

- (적용대상) 모든 기업(개인사업자포함)
- (적용요건) ①, ② 모두 충족
  - ①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②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 (세액공제율)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 (세액공제액)
  -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 적용기한: 20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 까지 적용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기업승계도 한결 쉬워졌다. 특히 상속공제, 사전증여,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꾸준히 건의해 온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기업상속공제는 대상과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업상속공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재산총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그간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상속인 및 피상속인(오너)의 승계 요건도 완화된다. 피상속인의 경우, 기존엔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보유지분이 50%(상장기업 30%) 이상이어야 기업을 물려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의 경력만 있어도 승계가 가능해진다. 또 최대주주로서 보유지분이 25%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상속인 역시 기업을 물려받기 전 2년 이상 종사해야 하는 규정 등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18세 이상이면 종사 기간과 무관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상속 후 사업 운영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사후 관리 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낮아졌다.

기업의 사전증여시 적용되는 과세특례 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상속세 과세 때 합산과세를 통해 정산된다. 다만 상속 개시일 현재 해당 기업은 주식 계속보유와 가업종사 등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경영요건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일정기간이상 대표이사(대표자)로 재직한 경우	피상속인이 5년이상 대표이사(대표자)로 재직하면서 경영한 경우
최대주주지분 보유요건	특수관계자 포함 지분비율 50% (상장 30%)이상 보유	피상속인이 지배주주로서 1인 지분비율 25% 이상인 경우(추가)
상속인 요건	상속 전 2년 이상 근무 (피상속인은 10년 경영)	상속 전 2년 이상 근무 폐지 (피상속인은 5년 경영)
사전증여 한도	30억원(5억 공제)	100억원(30억 초과 20%)

중소특별세액감면제도 연장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벤처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제도도 연장된다. 업종, 규모,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액의 5~3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가 201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2012년 기준 약 13만개의 중소기업이 6,324억원의 법인세 경감 혜택을 받는 등 중소기업이 많이 활용한 세제혜택 중 하나였다. 적용대상도 늘려 영화관 운영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 조기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속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수익 창출 능력이 처음에는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떨어진다는 가정 아래 출발,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해 차등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내야하는 초기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며 설비투자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경제 이전 기업에 세제혜택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기준일도 최초 소득 발생일로 바뀐다. 지금까지 세액 감면이 시작되는 기준일을 지방으로 회사를 옮기는 당일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오히려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일시에 이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본사인원 50% 이상이 지방근무를 하는 시점에 대한 판단시점도 이전일로부터 3년 후로 완화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으로의 공장 이전을 위한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2017년까지로 연장됐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게는 추가공제율이 1%포인트 인상됐다. 올해로 일몰에 정이었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 문화접대비는 문화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에 관해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 산입하는 제도다. 기업의 문화 예술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중소기업 기준 내년부터 달라져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접대비 가운데 세금을 감면해주는 한도도 기존 연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이 체감할 만한 세제 혜택이 많이 생겼다. 안전설비에 투자한 중소기업은 세액공제가 3%에서 7%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공장자동화 수입물품 중 2015년까지 수입하는 물품에 한해 50% 관세감면을 해준다. 중소·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불입원금 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했다.

내년부터 세법상 중소기업의 기준도 달라진다. 중소기업에 분류되기 위해선 종업원 수나 자본금, 매출 등을 모두 따졌지만 앞으로는 매출만 볼 예정이다. 연매출 기준 △음식업 400억원 △운수업 800억원 △도소매업 1,000억원 △제조업 1,5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8~9월중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에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장기 침체의 길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